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소량기준 (kg)	
				일일취급기준	보관·저장기준
368	26042-63-7	실버(I)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Silver(I) hexafluorophosphate	400	6,000
369	26087-47-8	이프로벤포스	Iprobenfos	400	6,000
370	26471-62-5	톨루엔 다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diisocyanate	400	6,000
371※	26628-22-8	아지드화 나트륨	Sodium azide	400	6,000
372※	28772-56-7	브로마디올론	Bromadiolone	400	6,000
373	29104-30-1	벤족시메이트	Benzoximate	400	6,000
374	29973-13-5	에티오펜캡	Ethiofencarb	400	6,000
375	31218-83-4	프로페탐포스	Propetamphos	400	6,000
376	34681-10-2	브토카르복심	Butocarboxim	400	6,000
377	35400-43-2	술프로포스	Sulprofos	400	6,000
378	36614-38-7	이소티오에이트	Isothioate	400	6,000
379※	39196-18-4	티오파녹스	Thiofanox	400	6,000
380	39300-45-3	디노캡	Dinocap	400	6,000
381	41198-08-7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400	6,000
382	42509-80-8	이사조포스	Isazofos	200	3,000
383	51630-58-1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400	6,000
384	52645-53-1	페메트린	Permethrin	400	6,000
385	55285-14-8	카보술폴	Carbosulfan	400	6,000
386	65907-30-4	푸라티오캡	Furathiocarb	400	6,000
387	66230-04-4	에스펜발러레이트	Esfenvalerate	400	6,000
388	68085-85-8	사이할로쓰린	Cyhalothrin	200	3,000
389	69409-94-5	플루발린에이트	Fluvalinate	400	6,000
390	69581-33-5	사이프로푸람	Cyprofuram	400	6,000
391	70124-77-5	플루싸이트린에이트	Flucythrinate	400	6,000
392	82560-54-1	벤프라캡	Benfuracarb	400	6,000
393	84852-15-3	p-n-노닐페놀류	p-n-Nonylphenols	400	6,000
394	89784-60-1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400	6,000
395	95465-99-9	카두사포스	Cadusafos	200	3,000
396	96182-53-5	테부피림포스	Tebupirimfos	200	3,000
397	96489-71-3	피리다벤	Pyridaben	400	6,000
398	98886-44-3	포스티아제이트	Fosthiazate	400	6,000
399	111872-58-3	할펜프록스	Halfenprox	400	6,000
400	120068-37-3	피프로닐	Fipronil	400	6,000
401	121552-61-2	사이프로디닐	Cyprodinil	400	6,000
402	128275-31-0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 퍼옥소산	1,3-Dihydro-1,3-dioxo-2H-isoin- dole-2-hexaneperoxoic acid	400	6,000

### ● 환경부고시제2017-24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4호, 2017.5.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2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제5조제2항의 "기본평가정보 변경사항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로 하고, 후단의 "기본평가정보 변경사항과"를 "별지 제21호서식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취급시설의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로서 확대된 영향범위 내에 새로운 보호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제7조제2항제4호 중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수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되어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때에는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5항 중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을 "화학사고 발생으로 제2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제6항, 제7항과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자화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화문서를 대신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장외영향범위구분도에 변경된 장외 평가정보를 적용하여 새로 산출한 영향범위를 표시한 도면

2.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⑦ 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때에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동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⑪ 제2항 제1호 및 제6항의 보호대상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한한다.

제7조제9항(현행 제7항)의 “제6항에도 불구하고”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현행 제8항) 제1호가목의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를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부지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된 경우. 다만,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나. 해당 취급시설의 새로운 위치에서의 영향범위가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장외영향평가서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법 제23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의 서류

2.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류

3. 별지 제21호서식의 서류(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로서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 등의 도면은 전자화문서로 제출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도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 안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화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오류 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를 제2항·제4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의 명칭, 작성일자, 전자화문서의 크기, 최종수정일자 및 제출일자 등을 제1항의 검토결과서 또는 제3항의 확인결과서에 명시하여 해당 전자화문서가 검토받은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제2항·제4항·제6항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서 또는 확인결과서와 검토필인이 표시된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를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총괄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으로 한다.

제25조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제1항에 따라 설정한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총괄영향범위를 전체 배치도에 표시(‘장외영향범위구분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는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화재·폭발시 영향범위와 독성물질의 유출·누출시 영향범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의 “「사고 영향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에”를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

번호	① 일자	②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명칭	③ 변경의 종류	④ 변경 내용 (변경전→변경후)	⑤ 후속조치	⑥ 담당자	⑦ 확인자 (일자)	비고

① ‘일자’란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한다.

②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명칭’란에는 별지 제8호·제9호 서식의 장치·설비명칭 또는 동력기계명을 기재한다.

- ③ ‘변경의 종류’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에 관련하여 (가) 시설규모 변경, (나) 시설위치 변경, (다) 시설 재질 변경, (라) 취급물질 변경, (마) 기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재한다. 2가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고, ‘(마) 기타’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 ④ ‘변경내용’란에는 변경의 종류별로 변경전의 사항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⑤ ‘후속조치’란에는 (가) 해당 변경사실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한 사실과 변경신고일자를 기재하고, (나)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변경신고’한 사실과 변경신고 일자, 시범생산기간 및 원상복귀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⑥ ‘담당자’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관리자를 기재한다.
- ⑦ ‘확인자(일자)’란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확인자’로 기재하고, 장외영향평가서의 기본평가정보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것을 확인한 일자를 기재한다.

### <변경내역서 작성 예시>

번호	일자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명칭	변경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전→변경후)	후속조치	담당자	확인자(일자)	비고
	'17.1.2	□□□	시설규모 변경	20톤 → 15톤	-	△△△	홍길동(1.10)	
	'17.2.5	◇◇◇	시설위치 변경	도면 0000번 참조	변경신고('17.2.20)	△△△	홍길동(2.5)	
	'17.4.5	◇◇◇◇◇	시설 재질 변경	00 → 00	-	○○○	홍길동(4.10)	
	'17.5.10 '17.7.1	□□□□□	취급물질 변경	황산30% → 황산 15% 황산30% → 황산 15%(복귀)	시범생산 신고일자: '17.5.9 지속기간: 5.10~6.30	○○○	홍길동(7.2)	

### ● 환경부고시제2017-247호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18년
2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6.0kg/인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